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10월 8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0월 18일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사회복지국장 황 은 채

나. 제안이유

- 구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24. 12. 31.)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하여 미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사 무 명 :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5조

○ 필요성

- 전문성 제고, 서비스 질의 향상
-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와 협업·협력 용이
- 이용자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위탁사무 :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 사례관리기능사업, 서비스제공기능사업, 지역조직기능사업

○ 시설개요

- 소재지 : 구미시 검성로 103-2
- 규모 및 주요시설

- 본관 : 917.01m²(지상3층)

(사회교육실, 황상지역아동센터, 사무실, 상담실, 강당 등)

- 별관 : 1,021.32m²(지하 1층, 지상 2층)

(경로식당, 건강관리실, 강동주간보호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 위탁기간 : 2025. 1. 1. ~ 2028. 12. 31.

○ 위탁조건

- 수탁업무 외 위탁 및 법인, 단체사무 처리 불가
-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 함
-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와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자 선정방식 :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 소요예산 : 연간 811,000천원 정도(시비 100%)

- 적정성 검토 : 적정 ※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성과평가결과 : 탁월(96점)
 - 다양한 복지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조직화 사업 및 아동청소년· 중장년 1인가구·노년기를 대상으로 전연령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시설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이 시설의 특성에 맞게 마련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자체점검 및 훈련이 계획대로 이루어짐.
 - 22년 실시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18.1.1 ~ '21.12.31 운영 실적)에서 최우수 등급인 'A' 등급 획득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재계약 적격(94점)

라.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동의안은

-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것을 동의받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인적물적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지역주민 중심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 현 수탁자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위탁형식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2024년 기준 사업비 873,800천 원의 예산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성과평가, 성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집행기관에서는 복지관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수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 2025년도 본예산 제출 전까지 민간위탁 재계약 감사결과 제출.
- 종합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추진이 필요함.

6. 소수의견의 요지: 생 략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